

<의안번호 제2008 - 3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01.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01. 16.

2. 개정이유

제증명 수수료의 현실화와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 개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일부 수수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안 제1조, 제5조)
⇒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자
- 나. 제증명 등 수수료 사무 및 요율의 조정(별표 1)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에 따른 관련 민원사무 6건 삭제

- ⇒ 부양가족 사실확인, 무적자 사실확인, 독자 사실확인, 가족 자가사육 사실확인,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 경작 사실확인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요율 및 민원사무명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연장 신청 수수료를 1,3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함
 - 의료법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허가 수수료 15,000원~50,000원을 20,000원 ~ 100,000원으로 조정함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를 5,000원에서 30,000원으로, 변경신고 10,000원으로 조정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사무 추가
 -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다.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민원사무명칭 조정 및 미비점 보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07. 11. 8.~ 11. 27.) 결과 : 의견 없음

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2007. 12. 26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 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수수료가 제공원가보다 낮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11종의 업무에 대한 전국적인 징수금액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 동 규정 제2조에서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단서를 규정하였는바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수수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였으나,

- 금번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탄력 수수료의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2007.10.4 대통령령 제2031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부칙 <제20310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류	금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	1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	1건당 3,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 1,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수수료	1건당 30,000원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10,000원